

# 국가근로 장학 규정

- 제정 : 2012. 6. 29.     개정 : 2017. 2. 28.
- 개정 : 2014. 1. 21.     개정 : 2018. 8. 31.
- 개정 : 2015. 3. 20.     개정 : 2019. 8. 26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재학생에 대한 국가근로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본교 국가근로 장학사업(이하 “본 사업”라 한다.)라 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국가근로 장학생(이하 “근로 장학생”이라 한다.)이라 함은 본 사업의 수혜를 받는 학생을 말한다.
- ② “정규학생”이라 함은 본교의 정규과정(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포함)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 (단, 외국국적 재학생, 외국대학 본교 교환학생, 산업체 위탁생,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제외한다.)

## 제 2 장 예산의 확보와 대응 투자

**제4조(근로 장학금 예산)** 근로 장학금의 예산은 대학별 국고지원금과 이에 따른 본교의 대응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.

**제5조(대응투자)** 본교는 교부받은 지원금액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근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

**제6조(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)** 재학 중인(복학생포함)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에 따라 재단심사 통과자에 대하여, 본 사업 업무처리기준

6-1-1 국가근로 장학 규정

에 따라 해당 학년도 사업비 예산범위 내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근로 대상자를 선발한다.

- 1. 삭제
- 2. 삭제
- 3. 삭제
- 4. 삭제
- ② 삭제
- ③ 삭제

**제7조(근로 장학생 선정 절차)**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에 국가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로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

- ② 삭제
- ③ 삭제

**제8조(근로 장소)** 본 사업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근로 세부유형별 장소로 한다.

- ① 삭제
- ② 삭제

**제9조(근로기간 및 시간)** 근로 장학생의 근로기간 및 시간은 학기를 구분하여 1일 8시간(분 단위 인정불가), 주당(월~일) 20시간(방학 중 40시간)으로 학기당 최대 4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본 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는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.

**제10조(근로 장학금의 산정 및 지급)** ① 근로 장학생의 시간당 근로 장학금은 매년 본 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 장학금과 교비 대응투자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
- ② 근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온라인출근부 승인을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하되, 매월지 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.
- ③ 근로 장학생이 임의로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온라인출근부 승인을 확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금액을 지급한다.
- ④ 교외근로에 대한 의무비율은 본 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.

## 제 4 장 근로 장학제도의 관리·운영

**제11조(근로 장학지원금의 관리)** ① 본교에 교부된 근로 장학지원금은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.

- ② 본교에 교부된 본 사업의 운영결과보고는 학기별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보고 한다.

③ 삭제

**제12조(근로 장학사업 운영)** ① 근로 장학생 운영으로 발생된 관련서류를 비치한다.

② 근로 장학사업 운영은 학생복지과에서 담당하며, 근로 장학생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(안전교육 및 인권침해교육 포함)을 실시하고 근로상황을 점검한다.

③ 근로 장학생이 신청한 내용 및 제출서류 허위, 학사징계, 근태 문제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학금을 회수하고 근로 장학생의 자격을 제한 한다.

④ 근로 장학생 중 허위 및 부정 근로 의심자로 통보 장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소명서, 허위 및 대리근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허위 및 부정 근로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을 회수하고 근로 장학생의 자격을 제한 한다.

⑤ 삭제

**제13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6-1-1 국가근로 장학 규정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